

#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마포구청의 위치가 성산동 275-3번지에서 성산동 370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나. “성산동 275-3번지”을 “난지도길 30(성산동 370)”으로 변경

## 3. 개정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(사무소의 소재지)

## 4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생략(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제1항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8.21)
- 다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성산동 275-3번지”을 “난지도길30(성산동 370)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75-3번지에 둔다.</p>	<p>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 난지도길 30(성산동 370) -----.</p>